

국민의당

보도자료

배포

2016년 3월 17일
(목) 14:00

담당 : 채이배 공정경제TF팀장 문의 : 장성옥 (010-6865-7553 / sami5187@naver.com)

‘개미 권리장전’

‘정도경영으로 기업과 소액투자자,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의당(공동대표 안철수·천정배) 공정경제TF팀(팀장 채이배 회계사)은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기업가치를 보호하여 소액투자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개미 권리장전’을 17일 오후 2시 당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1) 소액투자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주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금융소비자 예금자보호 확대 및 보호기금 마련 정책을 제시하고, 2)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 제도 보완하며, 3) 범죄 기업인이 ‘법과 돈 앞에서 평등’하도록 특경가법 처벌강화, 사면권 제한, 경영복귀 제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채이배 공정경제TF팀장은 “ 이번 공약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 세금, 처벌 등으로 더 큰 손실을 보도록 하여 정도경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3월 17일

국 민 의 당 정책위원회

1. 개미가 갑

1) 주주 대표소송 제도 활성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주주 대표소송에 대한 소제기 지분요건을 0.01%가 아닌 단독주주권으로 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사내이사: 연봉의 6배 이내, 사외이사: 3배 이내)를 폐지해야 함. 또한 종속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종속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다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함

* 분식회계, 불법경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사례에 비해 주주 대표소송은 연 평균 4건으로 매우 미흡함

2) 증권투자자 집단소송 활성화

증권집단소송법 상 소송사유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허위공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 및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 소송사유를 확대하여야 함. 지나친 남소방지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을 활성화하여 투자자 및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음

*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소송 5건만 제기됨

3)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독과점행위),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집단피해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함. 독과점기업의 지대추구를 억제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함

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확대하여 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자를 보호함.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분쟁조정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재원은 금융기관 출연)을 마련함

* 후순위채를 불완전판매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이 장기간의 소송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2.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금지

1) 회사이익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이익과 경영진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이사의 충실의무, duty of loyalty)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구체적 내용은 이사의 개시의무, 독립적 이사회 승인, 절차적·내용적 공정성 확보를 담도록 함. 또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를 전부 만회할 수 있도록 개입권,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도입함.

* 이사의 충실의무가 1998년 도입 당시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 상 규제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법 상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을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20%(현행: 직접지분으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통일하고, 효율성 등 예외사항을 없애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요건에 내부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증여이익 계산 방식을 개정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함. 일감몰아주기 등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하고, 세금없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함.

* 현대글로벌비스 : 지배주주 지분율이 43.39%에서 29.99%로 낮춰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제외
* 제일모직(과세대상 O)과 삼성물산(과세대상 X) 합병 : 제일모직이 내부거래가 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여 내부거래비중 요건 30%로 낮춰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3. 법과 돈 앞에서 평등한 범죄 기업인

1) 횡령·배임·조세포탈 가중처벌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경영자가

* 한화 김승연 사례 : 2014년 2월 1,500억원대 배임,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변제"와 "경제건설 이바지"를 이유로 집행유예 확정

일정금액(예, 10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은 경우와 특가법 상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도록 함. 또한, "경제발전 이바지" 같은 모호한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소명과 명확한 근거자료에 근거한 양형심사가 이루어지게 함.

2) 사면권 제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등을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면심사 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가중처벌과 사면권 제한으로 범죄의 적발가능

* SK 최태원 사례 :
2008년 5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 후 73일만에 광복절 특사.
2014년 2월 징역 4년 판결 후 2년7개월만에 광복절 특사

및 처벌가능성을 높여 국민 법 감정에 호응하고 기업의 정도경영을 촉진함.

3) 경영 복귀 제한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다시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을 금지함. 불법경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특가법 상 범죄관련업체 범위를 개정하여 추가적인 기업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함.

* SK 최태원 : 2016년 3월 주총에서 등기임원 선임예정
* 한화 김승연 : 2014년 12월 경영복귀 선언

<설명자료>

‘개미 권리장전’

‘정도경영으로 기업과 소액투자자, 금융소비자 보호’

1. 개미가 갑

<현황 및 문제점>

- 지배주주 등이 불법경영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사 및 감사가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음
 - 회사재산의 최후책임자로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지분률 요건으로 쉽지 않음
 -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이사로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지시나 관여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다수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 발생
 - 회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 발생
- 유일하게 증권 분야에서 2005년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집단소송은 2013년까지 5건에 불과한 실정임
 -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소방지장치를 지나치게 마련했음
 -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집단”으로서 허가받기가 쉽지 않음
-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되고 있으나,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임
 -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집단소송제 추진하였으나, 실패함
 - 17대 국회 이후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에 계속 발의되고 있으나 논의가 되지 않음
-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 ELS 폭락 등 금융소비자의 심각한 피해 및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가 이해가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이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고통을 겪음
 - 증권회사 등의 파산 시 예탁금 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주요 내용>

-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대표소송에 대한 소제기 지분요건을 0.01%가 아닌 단독주주권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함.
 - 상법 상 현재 사내이사의 경우 연봉의 6배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 연봉의 3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을 폐지해야 함.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 종속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종속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 증권집단소송제도를 개선하여 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증권집단소송법 상 소송사유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허위공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 및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 소송사유를 확대하여야 함.
 - 증권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3년간 3건)하여 집단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요건을 완화해야 함.
 - 현재 증권집단소송의 제기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허가요건인 구성원 50인 이상 요건은 완화하고 지분 0.01%의 요건을 폐지하여야 함.

-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대기업 등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독과점행위),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마련함
 -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도록 함
 - 금융기관의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보상을 원활하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출연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마련함

<효과>

-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다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함
- 투자자 및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음
- 기업과 경영진의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정도경영을 촉진할 수 있음
- 독과점기업의 지대추구를 억제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분쟁조정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함

2. 기업범죄로 돈 벌 수 없는 사회

<현황 및 문제점>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회사와의 거래로 회사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편취행위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음
 - 일감몰아주기 등은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훼손함
 - 경쟁법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고 살아남은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훼손함
 - 조세법 관점에서 보면, 세금없는 편법적인 증여,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줌

<주요 내용>

-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이익과 경영진 등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함.
 - 경영진 등에게 이해충돌 상황을 회사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개시의무)
 - 이해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등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사회 승인 시 절차적, 내용적 공정성 확보하도록 함
 -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를 전부 만회할 수 있도록 개입권(이사의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봄),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
-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 상 사익추구행위 규제를 보완하여 실효성 제고
 - 공정거래법 상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고, 효율성 등 예외 사항 요건을 없애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기준 중, 내부거래비중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증여이익 계산 방식에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지분을 차감항목을 삭제하여 실효세율을 높임.

<효과>

- 회사이익을 우선하도록 하여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보호함
-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공정하게 함
- 경영권 승계 과정에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하고, 조세징의를 달성함

3. 법과 돈 앞에서 평등한 범죄 기업인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들은 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 받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범죄 예방적 효과가 낮음.

○ 경제개혁연구소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특경가법’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피고인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 범죄피해를 변제하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전무죄의 현상이 확인됨. (1심에서 범죄피해 변제하여, 86.4%가 집행유예 선고)

- 통상적으로 범죄이득액 규모가 클수록 실형 선고비율이 증가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범죄이득액 증가가 실형선고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배주주 및 전문경영인에 대해 법원이 일반 범죄와는 다른 양형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최근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는 임원직 사임, 임기 만료 시 재선임 포기 등으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음

-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인신구속이 없는 경우 다시 황제경영에 복귀함

- 특경가법 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자는 일정기간동안 금융회사, 국가·지자체 출연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범죄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벌총수의 경영복귀를 막지 못함

<주요 내용>

○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시 양형 강화

-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이득액으로 인한 양형규정을 세분화하여 불법경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이득액을 얻은 경우 집행유예를 제한함.

- 법원의 양형 판단 시 추상적인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소명과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허위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경영자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
 - 대통령이 함부로 불법경영자를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면심사 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 불법경영자의 경영 복귀 제한
 - 특경가법 시행령 상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관련업체를 공범이 출자한 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까지 확대하고, 출자 단계를 확대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체로 확대해야 함

<효과>

- 불법행위를 한 기업 경영자를 엄벌함으로서 국민 법감정에 호응함
- 범죄의 적발가능성, 적발 후 처벌가능성이 높아야 범죄가 예방될 수 있으므로, 기업 범죄가 사라지고 정도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음
- 불법경영자의 경영 복귀를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음